

新羅 眞骨의 ‘家系 分枝化’에 대한 재검토 - 사위의 왕위계승권을 중심으로 -

이 재 환*

- | | |
|-------------------------------|--------------------------|
| I. 머리말 | IV. 사위의 왕위계승권 |
| II. ‘가계 분지화론’ 재검토 | V. 흥덕왕 사후 왕위계승 분쟁과
忠恭 |
| III. 중대 말·하대 초 왕위계승
분쟁의 성격 | VI. 맺음말 |

[국문초록]

지금까지 신라 중대 이후 진골이 단일한 父系 친족집단에서 여러 개의 家系 및 小家系로 분지화해 나갔고, 하대에 들어서면 이렇게 형성된 小家系들의 대표자들이 왕위를 두고 서로 경쟁하였다고 보는 견해가 널리 받아들여져 왔다. 그런데 중대 말·하대 초에 왕위를 둘러싼 대립이 첨예화되어 무력 분쟁에 이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특정 조상을 공유하는 家系가 세력 단위로 표방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왕위 계승에서 나타나는 신라의 특수성은 家系의 분지화가 아니라 사위(女壻)를 통한 왕통의 전달을 인정하는 데 있었다. 사위의 왕위계승권은 상고기의 왕위 계승에 관한 전승에서 나타나며, 이후 憲安王의 사위로서 즉위한 景文王처럼 사위의 자격으로 왕위를 이어받았던 사례들이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강사, manson97@snu.ac.kr

보인다. 神德王이나 경순왕 또한 憲康王의 사위와 외손이라는 관계가 왕위 계승의 근거가 되었음을 五廟 배향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분지화한 家系가 왕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충돌한 대표적인 사례로 여겨져 왔던 興德王 사후의 왕위계승 분쟁 또한 계승권자인 忠恭의 아들과 사위들이 왕위를 놓고 충돌한 것으로서, 소가계 분지화의 사례로는 보기 어렵다.

결국 신라 중·하대에 확인되는 왕위를 둘러싼 분쟁의 사례들은 ‘왕권’과 그 반대편의 ‘귀족’ 간에 벌어진 정치적 주도권 다툼이 아니라 왕위에 접근할 자격을 갖춘 이들 사이에서 왕위의 획득을 두고 벌어진 것이었다. 무열왕대 이후 신라에서는 ‘왕족’과 그 외의 진골 간의 명확한 구분을 설정하기 어렵게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주제어 : 가계 분지화, 진골, 사위(女壻), 왕위계승, 오묘(五廟), 왕족, 귀족

I. 머리말

신라에는 中古期까지 聖骨과 眞骨의 구분이 있었다. 善德女王的 즉위 과정을 살펴볼 때,¹⁾ 이들 간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자격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골은 진골보다 한 차원 높은 권위를 가지는 ‘王室’ 혹은 ‘王族’으로서의 성격을 가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성골 신분 소유자가 소멸하고, 진골이었던 태종무열왕 김춘추가 왕위에 오르면서 진골 왕의 시대가 시작되어 下代까지 이어졌다.²⁾ 이는

1) 『三國遺事』 卷1, 王曆1, “第二十七善德女王 名德曼 父眞平王 母麻耶夫人 金氏 聖骨男盡 故女王立”

2)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5 眞德王 8年 春三月條, “國人謂始祖赫居世至眞德二十八王 謂之聖骨 自武烈至永王 謂之眞骨”

『三國遺事』 卷1, 王曆1, “第二十八眞德女王 … <已上中古聖骨 已下古眞骨>”

‘왕족’으로서 진골로부터 분리되었던 성골이 사라짐으로써, 진골이 ‘왕족’을 포함하는 하나의 신분층으로 남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종래에는 王統이 진골에게 넘어가 진골과 ‘왕족’의 구분이 모호해진 무열왕대 이후의 신라에 있어서도 ‘(전제)왕권’과 ‘귀족’을 구분하여 두 세력의 관계 속에서 정치 운영을 설명해 왔다.³⁾ 이와 같은 이해 방식은 진골의 각 家系나 小家系가 分枝化하여 하나의 세력을 이루고 서로 대립 혹은 타협하였다는 전제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러한 家系들 중 중대에는 무열왕계가 왕위를 독점하였고, 나머지 진골 家系들은 ‘귀족’으로 존재하다가, 하대에 이들에게 왕위가 넘어가면서 각 귀족 家系들이 서로 왕위를 다투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골의 家系別 분지화라고 하는 설명 방식이 남아있는 사료들을 가장 단순하게 엮어낼 수 있는 해석의 틀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남아 있다. 본고는 이러한 전제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통해 나아가 신라의 ‘왕족’과 ‘귀족’의 구분 문제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II. ‘가계 분지화론’ 재검토

진골의 각 가계들이 하나의 세력으로 분화하였다는 이해 방식은 ‘家系分枝化論’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가계 분지화론’은 진골이 여러 개의 家系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단일한 혈연집단에서 분지화한 것이라는 전제에 기반한다. 그리고 여기서의 혈연집단은 기본적으로 父系 친족집단으로 간주된다. 즉, 하나의 父系 혈연집단이 家系 별로, 그리고

3) ‘(전제)왕권’과 ‘귀족’의 대립항 설정을 통한 신라사 연구의 흐름에 대해서는 이재환, 「신라사 연구에 있어서 ‘귀족’ 개념의 도입 과정」 『한국 고대사 연구의 시각과 방법』(사계절, 2014) 참조.

각 家系 내에서도 다시 小家系로 계속해서 分化해 나가면서 각각의 단위 세력을 형성하였다는 이해 방식이다. 특히 신라 하대는 이렇게 형성된 小家系들의 대표자들이 왕위를 두고 서로 경쟁하던 시기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대에 따른 骨의 分化라는 관점을 처음 제시한 것은 旗田巍였다. 그는 혜공왕 이후 귀족 반란의 원인을 설명하면서 同骨 중의 族, 同族 중의 家가 각기 독자적 행동을 취하고 있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⁴⁾ 이러한 견해를 이어받아 李基白은 통일을 계기로 신라 귀족들의 골품제도에 의한 연합이 내부적으로 분화하여 骨의 내부에 宗族이라고 부르는 사회적 세력단위가 대두하였으며,⁵⁾ 下代 왕위계승을 둘러싼 정권 다툼의 씨가 되었다고 보았다.⁶⁾ 이후 葛文王과 신라 하대 왕위계승쟁탈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혈족집단을 ‘家系’로 지칭하기 시작하였다.⁷⁾

이로부터 ‘骨의 分化’라는 관점은 신라의 사회적 세력 단위를 이해하는 기본 전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邊太燮은 五廟制의 실시에 큰 의미를 부여하여 신라가 ‘골품제’ 중심의 사회에서 家 중심의 사회로 변화해 나갔다고 파악하였고,⁸⁾ 李鐘恒도 ‘骨의 分化’라는 관점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였다.⁹⁾

李基東은 ‘골품제’로부터 家로의 발전을 도식화하는 데 문제를 제기하고, 骨族 내부에 있어 하나의 정치적·사회적 단위로 활동하는 혈족집단의 규모가 시대에 따라 변화한 것으로 보았다.¹⁰⁾ 그리고 三品彰英이 제안한

4) 旗田巍, 『朝鮮史』(東京: 岩波書店, 1951), pp.59-69.
 5) 李基白, 「新羅 私兵考」 『歷史學報』 9(1957)(『新羅政治社會史研究』(一潮閣, 1974), p.267에 재수록).
 6) 같은 책, pp.268-269.
 7) 李基白, 「新羅時代의 葛文王」 『歷史學報』 58(1973); 李基白, 「新羅 下代의 執事省」 앞 책.
 8) 邊太燮, 「廟制의 變遷을 通하여 본 新羅社會의 發展過程」 『歷史教育』 8(1964).
 9) 李鐘恒, 「新羅의 身分制度에 관한 研究 -部와 骨品과 位階를 中心으로-」 『法史學研究』 1(1974).
 10) 李基東, 「新羅 骨品制 研究의 現況과 그 課題」 『歷史學報』 74(1977)(『新羅骨品制社會와 花

마 있었던 lineage 개념을 적용하여,¹¹⁾ 李基白이 세력단위로서 제시한 ‘家系’가 곧 이에 가까운 존재였을 것으로 비정하였다.¹²⁾ 그는 奈勿王朝 성립 이후 왕위가 왕실친족집단 중 오직 한 혈통의 사람들에 의해 고정 세습됨에 따라, 나머지 왕실의 친족집단이 3세대를 지나는 동안 점차 分枝하여 갔다고 보면서 ‘分枝化’라는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였다.¹³⁾ 특히 중고 왕실 혈족집단의 분지화 과정에서 銅輪太子의 직계비속으로 구성된 왕실 小家系가 다른 왕실 친족집단과 구별되는 신분으로서 내세운 것이 성골이라고 본 견해는 ‘골품제’ 연구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¹⁴⁾

李純根은 상호간 협동적인 동일체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새로운 지파가 성립하는 ‘分枝化(Segmentation)’와 서로 대립하는 별개의 개체가 되는 ‘分裂化(fission)’를 구분하여, 신라 친족집단의 축소를 거쳐 羅末麗初에 새로운 성씨가 출현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¹⁵⁾ 李鍾旭은 신라 상대의 왕위계승을 부계혈족의 원리로 파악하면서 氏族(clan)과 家系(lineage) 이론을 받아들였다. 박·석·김씨가 각각 하나의 氏族이었으며, 각 氏族은 다시 크고 작은 家系로 분지되었다는 것이다.¹⁶⁾ 나아가 진골의 여러 家門 중에는 그 家門을 유지하는 중심 계보의 宗家가 있었다고 보고, 金入宅에 거주하며 각 집단의 家系를 지속시켜 갔다고까지 추정하였다.¹⁷⁾

그런데 ‘骨’로부터 家系가 分枝해 나갔다는 상정이 가능하려면 ‘骨’이 원래부터 단일한 父系 혈연집단이어야 한다. 그러나 ‘骨’은 하나의 커다

郎徒』(一潮閣, 1984), p.29에 재수록.

- 11) 三品彰英, 「骨品制社會」『古代史講座 7 古代社會の構造(下)—古代における身分と階級—』(東京:學生社, 1963).
- 12) 李基東, 앞 책(1984), p.30.
- 13) 李基東, 「新羅 奈勿王系의 血緣意識」『歷史學報』53-54(1972)(앞 책(1984)에 재수록).
- 14) 같은 책, pp.86-89.
- 15) 李純根, 「新羅時代 姓氏取得과 그 意味」『韓國史論』6(서울: 서울大 國史學科, 1980), pp.58-64.
- 16) 李鍾旭, 『新羅上代王位繼承研究』(民族文化研究所, 1980), p.40.
- 17) 李鍾旭, 「新羅時代의 眞骨」『東亞研究』6(서울: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85)(『新羅骨品制研究』(一潮閣, 1999), pp.243-247에 재수록).

란 父系 친족집단이 아니었다. 이른 시기부터 奈勿王 직계 외에도 朴氏나 昔氏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骨’ 신분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위 관등을 소지하고 왕실과 통혼한 사례들이 확인된다.¹⁸⁾ 동일인의 성씨와 출자에 대한 전승에 혼동이 있음을 감안하면,¹⁹⁾ 朴氏나 昔氏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실제로는 奈勿王 계통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朴氏나 昔氏로 기록된 王들을 聖骨로 간주하는 인식도 존재하였으므로,²⁰⁾ 骨이 奈勿王의 직계 후손들만으로 구성되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奈勿王 계통 외에 법흥왕 19년(532) 신라에 항복한 금관가야 왕 仇亥의 후손들 또한 골 신분의 구성원을 이루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구해의 아들 武力과 증손 金庾信이 모두 진골만이 오를 수 있는 최고위 관등 角干을 수여받았다.²¹⁾ 문무왕대에는 고구려를 멸망시킨 이후에도 그 王孫으로 인식되던 인물에게 金氏를 賜姓하며 眞骨에 포함시켰다.²²⁾ 신라에 의해 정복된 국가의 최고위층이 골 신분으로 편입되어 기존 신라의 최고 지배층과 더불어 골 집단을 구성하였던 것이다.

-
- 18)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實聖尼師今 卽位條, “母伊利夫人<伊一作企> 昔登保阿干之女”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智證麻立干 卽位條, “妃朴氏延帝夫人 登欣伊滄女”
 『三國遺事』 卷1, 王曆1, “第二十二智訂麻立干 … 妃迎帝夫人 儉攬代漢只登許<一作□□>角干之女”
 『三國遺事』 卷1, 王曆1, “第二十四眞興王 … 母只召夫人 一作息刀夫人 朴氏 牟梁里英失角干之女”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法興王 卽位條, “妃朴氏保刀夫人”
 - 19) 『三國史記』 卷44, 列傳4 異斯夫條, “異斯夫<或云苔宗> 姓金氏 奈勿王四世孫”
 『三國遺事』 卷1, 紀異1 智哲老王條, “王命伊滄朴伊宗 將兵討之”
 『三國遺事』 卷3, 興法3 原宗興法馱羈滅身, “粵有內養者 姓朴字厭羈 … 其父未詳 祖阿珍宗 卽習寶葛文王之子也 <… 又按金用行撰阿道碑 舍人時年二十六 父吉升 祖功漢 曾祖乞解大王>”
 - 20)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5 眞德王 8年 春三月條, “國人謂始祖赫居世至眞德二十八王 謂之聖骨”
 - 21) 『三國史記』 卷4, 法興王 19年條, “金官國主金仇亥 與妃及三子 長曰奴宗 仲曰武德 季曰武力 以國祭寶物來降 王禮待之 授位上等 以本國爲食邑 子武力仕至角干”
 『三國史記』 卷6, 文武王 7年 秋8月條, “秋八月 王領大角干金庾信等三十將軍 出京”
 - 22) 『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8 神文王 3年 冬10月條, “徵報德王安勝爲蘇判 賜姓金氏 留京都 賜甲第良田”

한편 麻立干時期를 거치면서 王京의 6部가 행정구역화하고 國王을 정점으로 한 신분제로 편제되는 과정에서 고위 신분층은 주로 국왕의 직접적 관할 하에 있던 喙部와 沙喙部の 유력자들로 구성되었다고 생각되지만,²³⁾ 여타의 部人들 중 일부도 포함되었음이 확인된다. 眞興王妃 息道夫人(息道夫人)의 아버지는 朴氏이며 牟梁部 소속으로 기록되어 있는데,²⁴⁾ 국왕과 혼인 관계를 맺고 骨 신분만 받을 수 있었던 최고급 관등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당시 신분 구조의 최상층에 편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骨로 분류되던 이들이 모두 단일한 부계 친족집단의 구성원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아울러 近親婚을 통해 각 인물들이 母系와 妻系로 뒤얽혀 있었음을 감안하면, 특정인을 기점으로 하여 분지화된 家系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들 혈연집단의 父系 계보가 유독 강하게 의식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신라에서 다른 혈연 원리보다 父系 혈통만을 중시하는 계보 집단이 정치 세력 단위가 될 정도로 강한 유대를 가지고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찍이 신라에는 애초에 부계혈연집단이 존재할 수 없었다는 주장까지 제기된 바 있었으며,²⁵⁾ 下代의 왕위계승 분쟁은 곧 왕족들 간의

23) 全德在, 『新羅六部體制研究』(一潮閣, 1996), pp.140-145.
 24)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卽位條, “…… 法興王弟葛文王立宗之子也 母夫人金氏 法興王之女 妃 朴氏息道夫人 ……”
 『三國遺事』 卷1, 王曆1, “第二十四眞興王 … 母只召夫人 一作息道夫人 朴氏 牟梁里英失伯口之女 … 第二十五眞智王 … 母朴英失角干之女 息途一作色刀夫人 朴氏 ……”
 『三國遺事』 卷3, 興法3 原宗興法 獸羈滅身條, “…… 按眞興乃法興之姪子 妃思刀夫人朴氏 牟梁里英失角干之女 ……”
 『삼국유사』 王曆의 “朴氏 牟梁里英失伯口之女”라는 설명은 眞興王의 어머니에 대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眞智王條의 어머니 眞興王妃에 대한 설명과 『삼국유사』 興法篇의 기록 및 『삼국사기』에서 眞興王의 어머니는 法興王의 딸로 金氏이며 妃가 朴氏 息道夫人이라고 한 서술을 감안하면 眞興王妃에 대한 설명으로 판단된다(『삼국유사』 王曆의 판독은 河日植, 「『삼국유사』 과본본과 임신본의 비교 검토」 『東方學志』 162(서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3), pp.126-127 및 남권희, 「과본본 『三國遺事』의 書誌 연구」 『東方學志』 162(서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3), pp.98-99 참조).
 25) 崔在錫, 「新羅時代의 氏族-리니지의 存否問題」 『韓國學報』 48(一志社, 1987)(『韓國古代社會史研究』(一志社, 1987)에 재수록).

분쟁이었으므로, 왕실과의 혈연관계에 얽매어 있는 고대 왕실 운영 성격상 ‘분지’와 ‘독립’이라는 용어는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²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계혈연집단의 분지화를 통해서 정치 세력의 형성을 설명하는 이해 방식은 여전히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²⁷⁾ 특히 신라 하대에 대해서는 원성왕계에서 분화된 각 小家系의 대표자들에 의한 왕위 쟁탈의 시기로 보는 견해가 주류를 이룬다. 하대를 왕계와 정치세력 변화에 따라 원성왕과 인검계기, 예영계기, 경문왕계기, 박씨 왕계와 경순왕기의 네 시기로 나누는 구분 방식에도 분지화된 家系의 대립과 타협이라는 관점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²⁸⁾ 다음으로 이 시기 왕위계승 분쟁을 ‘가계 분지화’에 입각하여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지 살펴보겠다.

Ⅲ. 중대 말·하대 초 왕위계승 분쟁의 성격

중대 말·하대 초에 왕위를 둘러싼 대립이 첨예화되어 무력 분쟁에까지 이르렀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왕위계승 분쟁의 와중에 진골과 일부 두품

26) 최의광, 「新羅 下代 王位繼承 分爭과 國人」 『史叢』 75(서울: 高麗大學校 歷史研究所, 2012), pp.146-160.

그는 하대의 왕위계승 분쟁이 왕위계승 자격을 가진 왕족들 간에 이루어진 것임을 명확히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오히려 ‘왕족’과 ‘귀족’을 구별해야 함을 더욱 강조하였다.

27) 下代를 다룬 대부분의 연구자가 이러한 관점을 채택하였다. 대표적인 연구 성과들만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崔柄憲, 「新羅 下代社會의 動搖」 『한국사 3』(국사편찬위원회, 1978); 吳星, 「新羅 元聖王系의 王位交替」 『全海宗博士華甲紀念 史學論叢』(一潮閣, 1979); 尹炳喜, 「新羅下代 均貞系의 王위계승과 金陽」 『歷史學報』 96(1982); 李明植, 「新羅 元聖王系의 分枝化와 王權崩壞」 『中齋張忠植博士華甲紀念論叢』(檀國大學校出版部, 1992); 金昌謙, 『新羅 下代 王位繼承 研究』(景仁文化社, 2003); 조인성, 「신라 하대·후삼국」, 『한국 고대사 연구의 새 동향』(서경문화사, 2007); 채미하, 「신라 국가제사와 왕권」(혜안, 2008); 권영오, 『新羅下代 政治史 研究』(혜안, 2011).

28) 조인성, 앞 논문, pp.163-164 참조.

층이 특정인을 왕위 계승권자로 내세우면서 각각 정치 세력을 형성하였지만, 이들이 특정 조상을 공유하는 家系를 세력화의 근거로 내세운 사실은 확인하기 어렵다.

김헌창은父 김주원이 왕위에 오르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을 표방하며 반란을 일으켰으나, 그 형제였던 김종기는 이에 동참하지 않았다. 김종기와 그의 후손들은 김헌창·김범문의 난이 진압된 이후에도 여전히 고위 관직에 오를 수 있었다. 이를 가계 분지화의 사례로 볼 경우, 친형제들도 본인이 생존해 있는 상태로 이미 각각 독립된 가계로 분지화한 것이 된다. 그렇다면 분지화는 이미 가계나 소가계를 넘어서 개인이나 개별 家(family) 단위에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세분화된 단위를 특정 家祖를 공유하는 하나의 家系이자 정치 세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²⁹⁾

나아가 김헌창·김범문의 난에는 김주원의 후손인 김헌창과 김범문父子뿐 아니라 지방 세력들도 개입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³⁰⁾ 이들을 모두 김헌창을 중심으로 형성된 小家系의 구성원들로 볼 수는 없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개인들이 김헌창·김범문父子를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한 것이다. 결국 김헌창·김범문의 난은 가계 분지화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대에 家系가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기능하고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겠다.³¹⁾

29) 盧泰敦, 「羅代의 門客」 『韓國史研究』21:22(1978)(『한국고대사의 이론과 쟁점』(집문당, 2009), pp.250-251에 재수록); 盧明鎬, 「高麗社會의 兩側의 親屬組織 研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國史學科 文學博士學位論文(1988a), p.31; 盧明鎬, 「羅末麗初 親族組織의 變動」 『又仁 金龍德博士 停年紀念史學論叢』(又仁金龍德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刊行委員會, 1988b), p.56 등에서도 이를 친족집단의 해체를 보여주는 사례로 간주하였다.

30) 朱甫墩, 「新羅 下代 金憲昌의 亂과 그 性格」 『한국고대사연구』 51(2008), p.261.

31) 특정 父子 祖上을 기반으로 枝派를 형성한 家系 의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물론 아니다. 金周元의 증손 金陽이 武烈王 9世孫을 표방한 것처럼(『三國史記』 卷44, 列傳4 金陽條, “金陽 字魏昕 太宗大王九世孫也 曾祖周元伊浪 祖宗基蘇判 考真茹波珍浪 皆以世家爲將相”), 奈勿王을 공동 조상으로 가지는 이들 중에서도 협소한 家系 계보를 내세운 사례가 확인된다. 枝派의 성립은 혈연집단에서 매우 보편적이고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한편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중고기 말엽인 진평왕 53년(631)에 이찬 칠숙과 아찬 석품의 謀反 사건에 대해 ‘夷九族’의 형벌을 내린 것을 반란을 일으킨 이가 속한 리니지 집단 구성원에 대한 連坐法으로 해석하기도 한다.³²⁾ 그러나 九族은 자신을 중심으로 한 4대조와 4세손, 또는 父系 四親族과 母系 三親族 및 妻族 二親族을 가리키는 용어로서,³³⁾ 처벌 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일정 범위 내의 친족을 지칭하는 것이지, 특정 인물을 공통조상으로 하는 부계 혈족집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 ‘九族’을 멸한다는 형벌 관념이 신라에만 특수하게 존재했던 것도 아니었음은 물론이다.

실제 왕위의 교체를 야기한 무력 분쟁의 사례에서도 분지화된 가계의 대립은 확인하기 어렵다. 신라 하대는 왕위쟁탈전의 시대로 인식되어 왔지만, 왕위를 둘러싼 실질적인 무력 분쟁은 중대에서 하대 전 시기에 걸쳐서 단 세 차례 발생했을 뿐이다. 혜공왕 사망을 전후한 분쟁과 헌덕왕의 즉위, 그리고 흥덕왕 사후의 왕위쟁탈전이 그것이다.³⁴⁾

이 가운데 김연승(헌덕왕)이 애장왕을 시해하고 즉위한 것은 숙부조카로부터 왕위를 찬탈한 사건이다. 이들이 각각 다른 小家系를 이루었다고 볼 경우 김현창의 아들들 사례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가계를 단위 정치 세력으로 간주하기 어렵게 된다.³⁵⁾ 아울러 숙부에 의한 왕위 찬탈

현상이다(李純根, 앞 논문, pp.58-60 및 李鍾書, 「羅末麗初 姓氏 사용의 擴大와 그 背景」 『韓國史論』 37(서울: 서울大 國史學科, 1997), p.57). 본고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신라 하대에 특정 父系 祖上을 기반으로 한 家系나 小家系가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다른 모든 관계들을 초월하여 정치 세력화의 기본 단위가 될 만큼 강조되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32) 李基東, 앞 책(1984), p.83.

33) 최재석, 앞 책(1987), p.14.

34) 흥덕왕 사망 직후 균정과 체류(희강왕) 간의 대결, 희강왕 즉위 후 김명(민애왕)에 의한 희강왕 시해, 우징(신무왕) 세력의 왕경 공격과 민애왕 시해 등 흥덕왕 사후에는 세 차례에 걸친 무력 분쟁과 왕위 교체가 발생하였지만, 이는 흥덕왕의 후계 자리를 놓고 다툰 일련의 사건으로서 동일한 성격으로 간주하였다.

35) 애장왕은 원정왕의 아들 인겸태자의 손자이며, 헌덕왕은 인겸태자의 아들로서 둘은 모두 ‘인겸계’의 동일 가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김연승(헌덕왕)의 왕위 찬탈을 그가계의 도전 위협에 맞서 가계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보는 시각까지 존재한다(金昌謙, 앞

은 신라만의 특수한 사례가 아니다. 朝鮮의 世祖나 明代 永樂帝의 즉위 과정과 같이 다른 왕조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아직 왕실 혹은 황실 近親을 정치적·군사적 實權으로부터 배제시키는 작업이 완료되지 못했을 때, 어린 왕의 숙부는 위협 요소로 변모할 가능성이 충분했다.

신라의 경우 애초에 왕의 근친을 정치로부터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그 親屬이 관직 수여의 중요 고려 요소였으며,³⁶⁾ 김언승은 즉위 당시 13세였던 애장왕을 대신하여 政事를 주관하는 섭정의 자리에 있었다. 결국 헌덕왕의 즉위는 숙부 혹은 섭정에 의한 왕위 찬탈로서, 왕조 국가에서 종종 나타나는 왕위계승 분쟁의 보편적 사례 중 하나일 뿐, 가계 분지화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다음으로 무열왕계와 (범)내물왕계의 각 가계들 사이의 대립으로서, 무열왕계에서 원성왕계로 왕통이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간주되어 온 혜공왕 사망 전후의 왕위계승 분쟁을 살펴보겠다. 『三國史記』 惠恭王 16年條의 기록에서는 혜공왕 말년 혼란의 원인을 절도와 기강이 무너지 災異가 빈발하고 人心이 등을 돌린 데에서 찾고 있다.³⁷⁾ 특히 빈번한 災異의 발생은 하늘이 국왕의 자격을 부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선전할 빌미를 제공하였다. 혜공왕 탄생에 얽힌 설화적 전승은 그러한 인식의 존재를 암시한다.³⁸⁾ 이러한 와중에 왕위를 노린 여러 세력들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였고, 선덕왕 김양상이 왕위에 오르면서 하대가 개창되었다.

선덕왕과 원성왕은 奈勿王之 10世孫·12世孫임을 표방하였다.³⁹⁾ 이 때문에 중대와 하대 구분의 의미를 무열왕계에서 (범)奈勿王系로 왕통이

책(2003), p.172).

36) 『新唐書』 卷220, 列傳154 東夷 新羅條, “其建官 以親屬爲上”
 37) 『三國史記』 卷9, 新羅本紀9 惠恭王 16年條, “王幼少卽位 及壯 淫于聲色 巡遊不度 綱紀紊亂 災異屢見 人心反側 社稷机隍 伊滄金志貞叛 聚衆 圍犯宮闕 夏四月 上大等金良相與伊滄敬信 舉兵誅志貞等 王與后妃爲亂兵所害 良相等諡王爲惠恭王”
 38) 『三國遺事』 卷2, 紀異2 景德王忠談師表訓大德條 참조.
 39) 『三國史記』 卷9, 新羅本紀9 宣德王 卽位條, “宣德王立 姓金氏 諱良相 奈勿王十世孫也”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元聖王 卽位條, “元聖王立 諱敬信 奈勿王十二世孫”

넘어간 데에서 찾기도 한다. 중고와 상대의 종말이 성골 왕의 멸절과 일치함을 감안할 때, 중대의 종말 또한 무열왕의 직계 남자손에 의한 왕위 계승이 해공왕대에서 끝난 것과 관련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나타난 현상일 뿐, 실제로 무열왕계와 奈勿王系가 독립된 가계로 분리되어 있었으며, 그들이 왕위를 다투었는지는 확인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奈勿王 이후 신라의 모든 王은 奈勿王의 후손 중에서 나왔다. 태종 무열왕 또한 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의 할아버지 진지왕은 진흥왕의 次子였는데, 진흥왕은 지증왕의 손자이며, 지증왕은 곧 奈勿王의 증손이었다. 결국 무열왕은 奈勿王의 8世孫에 해당하는 것이다.

王들 뿐만 아니라 居柒夫를 奈勿王 5世孫이라고 하고,⁴⁰⁾ 異斯夫를 奈勿王 4世孫이라고 하였으며,⁴¹⁾ 진평왕 9년에 唐으로 건너간 大世를 奈勿王 7世孫이라고 한 것처럼,⁴²⁾ 奈勿王은 신라 김씨의 중시조로서 세대수 산정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간주되었다. 무열왕 이후 중대 왕실이 태조성한왕과 少昊金天氏를 내세우면서 기존 김씨 왕실과의 차별성을 강조하였다는 견해가 있으나,⁴³⁾ <毘盧寺眞空大師普法塔碑>에서 大師의 계보를 “그 선조가 聖韓으로부터 내려와 那勿에서 흥하였다”고 표방하고 있는 것을 보아,⁴⁴⁾ 성한은 중대 왕실만의 조상으로 간주된 것이 아니라 김씨의 공통 조상으로서 奈勿王 위에 가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少昊金天氏나 金日磾 역시 중대 왕실 뿐 아니라 가야계 김씨도 그 姓氏의 원류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중국의 非신라계 김씨를 포함하여 ‘金’

40) 『三國史記』 卷44, 列傳4 居柒夫, “居柒夫<或云荒宗>姓金氏 奈勿王五世孫”

41) 『三國史記』 卷44, 列傳4 異斯夫, “異斯夫<或云苔宗>姓金氏 奈勿王四世孫”

42)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平王 9年, “秋七月 大世仇柒二人適海 大世 奈勿王七世孫 伊滄冬臺之子也”

43) 李文基, 「新羅 金氏王室의 少昊金天氏 出自觀念의 標榜과 變化」 『歷史教育論集』 23:24(1999), p.671.

44) <毘盧寺眞空大師普法塔碑>, “俗姓金氏 鷄林人也 其先降自聖韓 興於那勿”

을 姓氏로 삼은 모든 집단들이 그 姓氏의 근원으로 삼은 존재였다.⁴⁵⁾ 결국 무열왕계가 중대에 奈勿王系로부터 始祖를 달리할 만큼 근본적인 본리를 표방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혜공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宣德王과 다음의 원성왕 또한 武烈王系와 단절되는 독자적 家系の 始祖를 내세웠음은 확인할 수 없다. 선덕왕 김양상은 聖德王의 3女인 사소부인의 아들이었다. 당시 왕위의 계승은 성덕왕의 2子인 景德王의 아들 혜공왕에 이르렀다가 끊어진 상태였다. 혜공왕에게는 형제가 없었으므로, 성덕왕의 형제나 그 후손들에게 왕위계승 순위가 넘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하겠다. 성덕왕에게는 3남매가 확인되는데, 그들의 자손으로 성정왕후 소생의 사소부인과 소덕왕후 소생의 효성왕 및 경덕왕이 있다. 효성왕은 아들이 없어 동생을 태자로 삼은 바 있으며,⁴⁶⁾ 딸이 있었는지는 현재로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사소부인의 아들인 선덕왕 김양상은 혜공왕 사망 시점에 혜공왕의 近親으로서 유력한 왕위계승 후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계승권의 근거는 外祖인 성덕왕에게 있었다.

이는 宣德王代의 五廟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宣德王代의 기록에는 元年에 父 孝芳을 開成大王으로 추봉하고 母 金氏를 높여 貞懿太后로 삼은 사실만 있을 뿐 五廟 설치 사실이 직접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⁴⁷⁾ 元聖王 元年에 五廟 설치 기사에서 훼손한 기존의 二廟가 언급된 것을 통해 복원할 수 있다.⁴⁸⁾ 이를 통해 始祖大王과 不遷인 太宗大王·文武大王

45) 鄭淳日, 「唐代 金氏 관련 墓誌의 초보적 檢討」 『新羅史學報』 16(2009), pp.394-401 참조. 단, 이 논문에서 신라계임이 확인되지 않는 김씨 가문들에 대해서 신라와의 연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

46) 『三國史記』 卷9, 新羅本紀9 景德王 卽位條, “景德王立 諱憲英 孝成王同母弟 孝成無子 立憲英爲太子 故得嗣位”

47) 『三國史記』 卷9, 新羅本紀9 宣德王 元年, “追封父爲開聖大王 尊母金氏爲貞懿太后 妻爲王妃 拜伊滄敬信 爲上大等 阿滄義恭爲侍中 改御龍省奉御爲卿 又改卿爲監”

48)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元聖王 元年 2月條, “毀聖德大王開聖大王二廟 以始祖大王太宗大王文武大王及祖興平大王考明德大王爲五廟”

을 포함하여, 考인 開成大王과 함께 外祖인 聖德大王이 五廟에 배향되었음이 확인된다.

결국 宣德왕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근거는 성덕왕으로부터 사위인 개성대왕(효방)을 거쳐서 그에게로 이어진 혈통에 있었다고 하겠다. 奈勿王의 후손 가운데 특정인을 독립 가계의 始祖로 표방한 것이 아니라, 前王인 혜공왕의 祖父 聖德王의 후손임을 내세운 것이다. 여기서의 특이점은 사위를 통한 계승이 인정되고 있다는 점뿐이다. 그런데 宣德王은 자식이 없이 사망하였으므로,⁴⁹⁾ 다음 왕위는 宣德王과 가까운 혈연 관계를 가지는 후보자들 가운데 선택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유력한 왕위계승 후보자로 거론된 인물이 김주원과 김양상이었다.

당시 群臣들은 ‘왕의 族子’인 주원을 왕위에 세우고자 하였고, 或者가 大雨를 근거로 당시 상대등이었던 김경신을 새로운 후보자로 제안하면서 덕망·외모와 함께 내세운 것 또한 ‘前王의 동생’이라는 점이였다.⁵⁰⁾ 원성왕 김경신은 이 밖에 『舊唐書』와 『冊府元龜』에는 前王의 從兄弟로, 『新唐書』에는 從父弟로 나온다. 김경신·김주원이 선덕왕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혈연관계에 있었는지를 복원할 수는 없지만,⁵¹⁾ 모두 前王인 선덕왕과의 관계를 밝히고 있을 뿐, 그의 家系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음이 주목된다.

결국 김주원이 무열왕계였기 때문에 왕위를 계승할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그에 맞선 김경신이 奈勿王系나 자신의 독자적 家系를 내세웠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들은 前王과의 혈연적 관계에 기반하여 왕위계승 후보자가 된 것이다. 上宰나 上大等은 관직일 뿐, 그것이 곧바로 왕위계

49)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元聖王 卽位條, “…… 及宣德薨 無子 ……”

50)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元聖王 卽位條, “及宣德薨 無子 群臣議後 欲立王之族子周元 … 或曰 … 今日暴雨 天其或者不欲立周元乎 今上大等敬信 前王之弟 德望素高 有人君之體 於是 衆議翕然 立之繼位 既而雨止 國人皆呼萬歲”

51) 김경신의 경우 선덕왕과 母系를 기준으로 한 從兄弟간이었을 가능성이 제시된 바 있다(李基白, 「上大等考」 『歷史學報』 19(1962)(알 책(1974), p.114에 제수록).

승의 자격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⁵²⁾

가장 유력했던 왕위계승 후보자 김주원을 제치고 김정신이 왕위에 오르니, 그가 곧 원성왕으로서, 이후의 왕들은 모두 그의 후손들 중에서 배출되었다. 이 때문에 신라 하대를 원성왕계의 시대로 규정하고, 선덕왕은 무열왕계의 시대인 중대로부터의 과도기적 존재라고 보기도 한다. 사실 원성왕이 일단 왕위에 오른 이상, 그의 후손이 끊어지거나 특별한 왕위계승 상의 큰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의 후손들에게 왕위가 이어지는 것은 왕조 국가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따라서 중대에 무열왕의 후손들이, 하대에는 원성왕의 후손들이 왕위를 독점한 것은 왕위계승에 따른 결과로서의 현상일 뿐, 각각을 始祖로 하는 家系の 분지화를 보여준다고 확인할 수 없다.

부계 혈연관계에 기반한 家系나 친인척 관계가 특정 인물들이 결합하여 세력화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서로 상당히 가까운 혈연 관계를 가지고 있던 유력한 왕위계승권자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의 이합집산은 父系の 家系뿐 아니라 개인의 성향을 비롯하여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또한 다른 시대나 왕조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는 양상이다.

혜공왕 말년부터 원성왕 즉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나타난 왕위계승 분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신라의 특수성은 家系の 분지화가 아니라 사위를 통한 왕통의 전달이 인정되었다는 점이라 하겠다. 사위의 왕위계승권은 신라 상고기의 왕위 계승에 관한 전승에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신라 왕위계승의 특별한 면모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52) 단, 신라에서는 왕과의 親屬 관계가 관직 승진의 주요 고려 요소였으므로, 최고위 관직에 올라 있었음을 그만큼 왕과 가까운 혈연 관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하는 것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IV. 사위의 왕위 계승권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삼국유사』 왕력에 따르면, 신라 상고기에는 朴·昔·金의 세 성씨가 번갈아 왕위를 차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흔히 ‘三姓交立’이라고 부른다. 초기 기록의 한계성 때문에, ‘삼성교립’이 특정 시기에 실재한 것인지 아닌지는 판단내리기 어렵다. 사실 상고기에 성씨가 실제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상고기 인물의 성씨는 계보 전승에 따라 후대에 붙여졌다고 생각된다. 때문에 동일인에 대해서도 성씨에 대한 다른 전승이 남아 있기도 하다. 이때 세 성씨가 각각 집단적 실체를 이루며 존재했다고 상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왕위계승 방식의 이미지가 후대 신라인에게 전달되었든, 아니면 후대에 만들어져 상고기 왕계에 적용되었든 간에 후대의 신라인들에 의해 인지되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그런데 ‘삼성교립’이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 딸의 남편, 즉 사위의 왕위 계승 자격이 거론되고 있었음이 주목된다. ‘삼성교립’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삼국사기』 儒理尼師今 즉위조에 인용된 金大問의 설명이 유일한데,⁵³⁾ 여기서 인용된 남해의 遺詔는 朴·석 두 성씨에 대한 것뿐으로, 이 원칙만으로는 김씨가 어떻게 朴씨·석씨와 동등한 왕위 계승의 자격을 얻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 없다. 성씨 관념이 후대에 생긴 것을 감안하면, 남해의 遺詔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아들과 사위에게 왕위의 계승 자격을 모두 열어준 데 있다고 하겠다. 유리 이사금의 遺詔에서는 先王인 남해의 遺詔가 “아들과 사위를 논하지 말고, 나이가 많고 현명한 자로써 왕위를 잇게 하라”는 내용으로 인용되었다.⁵⁴⁾

53)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1 儒理尼師今 元年, “金大問則云 尼師今 方言也 謂齒理 昔南解將死 謂男儒理婿脫解曰 吾死後 汝朴昔二姓 以年長而嗣位焉 其後 金姓亦興 三姓以齒長相嗣 故稱尼師今”

결국 석탈해가 왕위를 이을 수 있었던 자격은 그가 前王의 사위였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후에도 前王의 사위라는 자격은 왕위 계승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脫解 이후 왕위는 다시 儒理王의 직계 박씨 자손들에게 넘어갔다가, 아달라 이사금의 無子로 인하여 다시 脫解의 후손 석씨에게 왕위가 넘어오게 된다.⁵⁵⁾ 아달라 이사금의 父 逸聖 이사금은 前王인 지마 이사금의 자식이 없어 왕위에 오를 바 있었으므로,⁵⁶⁾ 아달라 이사금을 마지막으로 유리 이사금의 직계 자손은 끊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다시 거슬러 올라가 탈해의 자손에게 왕위가 전해진 것이다. 이는 子·壻를 막론한 前王과의 관계가 중요시되었을 뿐, 성씨는 후계자 선정의 직접적 고려 요소로 간주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석씨 內에서도 사위는 여전히 왕위 계승권을 가진 존재로 여겨졌다. 조분 이사금은 前王인 나해 이사금의 사촌 형제인 동시에 사위였는데,⁵⁷⁾ 조분 이사금이 遺詔에서 나해를 후계자로 결정할 때 언급한 것은 사촌 형제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사위로서의 관계였다.⁵⁸⁾

미추 이사금이 김씨로서 처음으로 왕위에 오르게 된 과정에도 조분 이사금의 사위라는 관계가 보인다. 그의 父系나 母系로는 前王인 첨해 이사금이나 조분 이사금 등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⁵⁹⁾ 조분 이사금의

-
- 54)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1 脫解尼師今 元年, “儒理將死曰 先王願命曰 吾死後 無論子壻 以年長且賢者 繼位 是以寡人先立 今也宜傳其位焉”
 - 55) 『三國史記』 卷2, 新羅本紀2 伐休尼師今 卽位條, “伐休<一作發暉>尼師今立 姓昔 … 阿達羅 薨 無子 國人立之”
 - 56)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1 祇摩尼師今 23年 秋8月, “王薨 無子”
『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1 逸聖尼師今 卽位條, “逸聖尼師今立 儒理王之長子<或云日知葛 文王之子>”
 - 57) 『三國史記』 卷2, 新羅本紀2 助賁尼師今 卽位條, “助賁尼師今立<一云諸賁> 姓昔氏 伐休尼 師今之孫也 父 骨正<一作忽爭>葛文王 母 金氏玉帽夫人 仇道葛文王之女 妃阿爾兮夫人 奈 解王之女也 前王將死 遺言以壻<助賁>繼位 王身長 美儀表 臨事明斷 國人畏敬之”
 - 58) 『三國史記』 卷2, 新羅本紀2 助賁尼師今 元年, “前王將死 遺言以壻助賁繼位”
 - 59) 『三國史記』 卷2, 新羅本紀2, 味鄒尼師今 卽位條, “味鄒尼師今立<一作味照> 姓金 母朴氏 葛文王伊柒之女 … 其先闕智出於鷄林 脫解王得之 養於宮中 後拜爲大輔 闕智生勢漢 勢漢 生阿道 阿道生首留 首留生郁甫 郁甫生仇道 仇道則味鄒之考也”

동생으로서 왕위에 올랐던 침해 이사금이 無子로 사망하자,⁶⁰⁾ 다시 조분 이사금의 자손에게서 계승자를 찾아야 했는데, 미추는 조분 이사금의 딸 光明夫人과 혼인한 상태였다.⁶¹⁾ 이후 왕위는 조분 이사금의 아들 유례로 이어졌다가,⁶²⁾ 無子로 인하여 다시 조분 이사금의 후손인 기림 이사금에게 전해졌다.⁶³⁾ 기림 이사금 또한 자식이 없어 각간 우로의 아들 흘해가 뒤를 이었는데,⁶⁴⁾ 우로는 조분 이사금의 사촌 형제인 나해 이사금의 아들인 동시에 조분 이사금의 사위이기도 하였다.⁶⁵⁾ 어느 쪽으로 보나 조분 이사금과 가까운 친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위라는 관계가 더 가깝다.

흘해 이사금을 이어 奈勿이 즉위하였고, 이후로는 신라 멸망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奈勿의 후손이 왕위를 이어나가게 되었다. 奈勿의 妃는 김씨 保反夫人으로 미추 이사금의 딸이었다.⁶⁶⁾ 흘해 이사금에게도 자식

『三國遺事』 卷1, 王曆1, “第十三末鄒尼師今 一作味紹 又末祖 姓金氏 始立 父仇道葛文王 母生乎 一作述禮夫人 伊非葛文王之女 朴氏”

- 60) 『三國史記』 卷2, 新羅本紀2 沾解尼師今 卽位條, “沾解尼師今立 助賁王同母弟也”
『三國史記』 卷2, 新羅本紀2 味鄒尼師今 卽位條, “味鄒尼師今立 … 妃昔氏光明夫人 助賁王之女 … 沾解無子 國人立味鄒 此金氏有國之始也”
- 61) 『三國遺事』 卷1, 王曆1, “第十三末鄒尼師今 … 妃諸賁王之女光明娘”
아마도 조분 이사금의 子婿 가운데 최연장자가 아니었나 한다.
- 62) 『三國史記』 卷2, 新羅本紀2 儒禮尼師今 卽位條, “儒禮尼師今立<古記 第三第十四二王 同諱 儒理 或云儒禮 未知孰是> 助賁王長子 母朴氏 葛文王奈音之女”
『三國遺事』 卷1, 王曆1, “第十四儒禮尼師今 一作世里智王 昔氏 父諸賁王”
- 63) 기림 이사금은 조분 이사금의 손자이자 유례 이사금의 조카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조분 이사금의 둘째 아들이라는 전승과 그의 아버지가 조분 이사금의 손자였다는 전승 또한 함께 남아 있어 확실하지 않다. 단, 조분 이사금 계통의 인물이었던 점만은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三國史記』 卷2, 新羅本紀2 基臨尼師今 卽位條, “基臨<一云基丘>尼師今立 助賁尼師今之孫也 父乞淑用滄<一云 乞淑 助賁之孫也>”
『三國遺事』 卷1, 王曆1, “第十五基臨尼師今 一作基立 昔氏 諸賁王之第二子也”
- 64) 『三國史記』 卷2, 新羅本紀2, 訖解尼師今 卽位條, “訖解尼師今立 … 基臨薨 無子 群臣議曰 訖解幼 有老成之德 乃奉立之”
- 65) 『三國史記』 卷2, 新羅本紀2, 訖解尼師今 卽位條, “訖解尼師今立 奈解王孫也 父于老角干 母命元夫人 助賁王女也”
『三國遺事』 卷1, 王曆1, “諸十育乞解尼師今 昔氏 父于老音角干 卽奈解王第二者也”
- 66)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奈勿尼師今 卽位條, “奈勿<一云那密>尼師今立 姓金 仇道葛文王之孫也 父末仇角于 母金氏休禮夫人 妃金氏 味鄒王女”

이 없자, 조분 이사금의 사위였던 미추 이사금의 후손에게로 계승 순위가 넘어가게 되는데,⁶⁷⁾ 奈勿은 미추 이사금의 조카인 동시에 사위였다. 그 뒤를 이은 實聖 또한 미추 이사금의 사위였다는 점이 주목된다.⁶⁸⁾ 訥祗 마립간은 즉위 과정을 놓고 보면 前王인 實聖 이사금을 시해하고 스스로 즉위한 것이지만,⁶⁹⁾ 관계에 있어서는 역시 前前王 奈勿의 長子인 동시에 前王 實聖의 사위였다.⁷⁰⁾

이와 같은 신라 상고기 왕위 계승의 실재 여부는 현재로서 확정지을 수 없으나, 사위와 그 자식인 外孫 또한 후계자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인식이 후대에 전해지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왕위 계승에 있어서 姓氏는 중요한 고려 요소가 아니었으며, 이는 아직 姓氏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였음을 감안할 때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결국 후대에 ‘삼성교립’이라고 간주된 왕통의 교대 현상은 사위에 의한 계승에 따른 결과라고 하겠다.

일찍이 末松保和가 상고기 三姓의 ‘계승수법’이 女婿관계에 기초하고 있다고 본 바 있다.⁷¹⁾ 그러나 그는 이를 女系的 계승에서 男系的 계승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6·7세기의 어느 한 시기를 모계제에서 부계제로의 이행기로 파악하는 데 문제가 있다

『三國史記』卷3, 新羅本紀3 訥祗麻立干 卽位條, “訥祗麻立干立 … 奈勿王子也 母保反夫人 <一云內禮吉禰> 味鄒王女也”

67) 『三國史記』卷3, 新羅本紀3 奈勿尼師今 卽位條, “訖解薨 無子 奈勿繼之”

68) 『三國史記』卷3, 新羅本紀3 實聖尼師今 卽位條, “實聖尼師今立 闕智裔孫 大西知伊滄之子 母 伊利夫人<伊一作企> 昔登保阿干之女 妃 味鄒王女也 … 奈勿薨 其子幼少 國人立實聖繼位”

69) 『三國史記』卷3, 新羅本紀3 訥祗麻立干卽位條, “奈勿王三十七年 以實聖質於高句麗 及實聖還爲王 怨奈勿質已於外國 欲害其子以報怨 遣人招在高句麗時相知人 因密告 見訥祗則殺之 遂令訥祗往 逆於中路 麗人見訥祗 形神爽雅 有君子之風 遂告曰 爾國王使我害君 今見君 不忍賊害 乃歸 訥祗怨之 反弑王自立”

70) 『三國史記』卷3, 新羅本紀3 訥祗麻立干卽位條, “訥祗麻立干立 … 奈勿王子也 … 妃 實聖王之女”

71) 末松保和, 「新羅上古世系」 『京城帝國大學文學會 史學論叢』(東京: 岩波書店, 1938)(『新羅史의 諸問題』(東京: 東洋文庫, 1954), pp.98-103에 재수록).

는 비판이 이루어졌다.⁷²⁾ 이후 崔在錫이 부계혈족집단의 존재와 三姓交立을 부정하고, 子·女·女婿·親孫·外孫 5종의 친족원이 왕위계승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았으며,⁷³⁾ 河廷龍 또한 崔在錫의 견해에 기반하여 상대 왕실의 근친혼을 분석하였다.⁷⁴⁾

실제 여부가 불확실한 上代의 典例 외에 사위를 왕통의 계승권자 중 하나로 간주하는 관념이 언제 실질적으로 신라인들 사이에 자리잡게 되었는지 또한 확실하지는 않지만, 『삼국사기』 儒理尼師今 즉위조에 인용된 金大問의 언급을 참조할 때 늦어도 7세기 후반에는 그와 같은 인식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⁷⁵⁾

이후의 시기에 실제로 사위의 자격으로 왕위를 이어받았던 사례들이 확인된다.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던 憲安王은 臨海殿 宴會에서 마음에 든 王族 膺廉에게 長女를 시집보내고, 이듬해 와병 중에 사위인 그에게 왕위를 넘긴다는 遺詔를 남겼다.⁷⁶⁾ 遺詔에 근거하여 사위의 자격으로 현안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응림이 곧 景文王이다.

景文王이 아버지 阿滄 啓明을 懿恭大王으로 追封한 것은 6년 (866) 춘정월에 이르러서이다. 이는 다른 왕대에 즉위년이나 이듬해 춘정월까지 先代에 대한 추봉을 완료한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때문에 아버지 啓明

72) 李基東, 「新羅 中古時代 血族集團의 特質에 관한 諸問題」 『震檀學報』 40(1975)(앞 책(1984), pp.106-112에 재수록).

73) 崔在錫, 「新羅王室의 王位繼承」 『韓國家族制度史研究』(一志社, 1983).

74) 河廷龍, 「新羅上代 王位繼承 研究 -王室內 近親婚을 中心으로-」 『新羅文化』 12(1995).

75) 金大問은 성덕왕 3년(704)에 漢山州都督에 임명된 바 있으므로(『三國史記』 卷46, 列傳6),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전반에 걸쳐 활동하였던 인물로 추정된다.

76) 『三國史記』 卷11, 新羅本紀11 憲安王 5年 春正月, “王寢疾彌留 謂左右曰 寡人不幸 無男子有女 吾邦故事 雖有善德眞德二女主 然近於牝雞之晨 不可法也 甥膺廉 年雖幼少 有老成之德 卿等 立而事之 必不墜祖宗之令緒 則寡人死 且不朽矣”

여기서 현안왕은 응림과의 관계를 ‘甥’이라고 표현하였다. ‘甥’은 자매의子女와 사위, 外孫 등의 의미를 가진다. 『三國遺事』 王曆에 따르면 응림의 어머니 光和夫人은 神武王의 딸이라고 하므로, 神武王의 동생인 憲安王을 기준으로 응림을 甥姪이나 外孫으로 보기는 어렵다. 현안왕 4년의 기사나 遺詔의 ‘有女’ 언급을 감안할 때 여기서의 ‘甥’은 사위를 가리킴이 분명하다.

이 경문왕 즉위 이후에도 생존해 있다가 이때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⁷⁷⁾ 아버지가 생존해 있었음에도 경문왕이 즉위한 것이라면, 그가 父系 혈통에 기반한 家系の 대표자로서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사위로써 현안왕의 왕통을 계승하였음이 더욱 명백해진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정황은 하대 박씨 왕계를 연 神德王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신라말 3대에 걸친 박씨 왕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며, 현재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 신덕왕의 가계에 대하여 『삼국사기』에서는 그의 아버지로 예겸만을 들고, 宣聖大王으로 추봉한 사실을 기록하였다.⁷⁸⁾ 그런데 『삼국유사』 왕력은 예겸이 신덕왕의 義父였으며, 친부인 문원이 별도로 존재하였고 興廉大王으로 추봉되기까지 하였음을 알려준다.⁷⁹⁾ 어머니 貞花夫人의 아버지 順弘 角干이 成武大王으로 추봉되었던 것 또한 알 수 있다. 친부계와 모계는 박씨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이들로부터 前王과의 혈통 관계를 유추하기는 어렵다. 義父인 예겸 또한 정강왕 때 대아찬이 되었다고 하였고, 『삼국사기』 憲康王 卽位條에서 대아찬으로서 侍中이 되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을 뿐, 前王과의 관련성을 더 추적할 자료는 없다.

그보다 주목되는 점은 그의 妃 김씨가 현강왕의 딸이었다는 사실이다.⁸⁰⁾ 前王인 효공왕이 無子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다음 왕위 계승 후계자로는 先代인 현강왕의 후손들이 가장 유력하였을 것이다. 결국 현강왕

77) 李基東, 「新羅 下代の 王位繼承과 政治過程」 『歷史學報』 85(1980)(앞 책(1984), p.169에 제 수록).

78) 『三國史記』 卷12, 新羅本紀12 神德王 卽位條, “神德王立 姓朴氏 諱景暉 阿達羅王遠孫. 父 父兼<一云銳謙> 事定康大王爲大阿濱 母 貞和夫人”

『三國史記』 卷12, 新羅本紀12 神德王 元年 五月條, “追尊考爲宣聖大王 母爲貞和太后 妃爲 義成王后 立子昇英爲王太子”

79) 『三國遺事』 卷1, 王曆第一 第五十三神德王條, “朴氏 名景徽 本名秀從 母貞花夫人 夫人之父 順弘角干 追諡成虎大王 祖元隣角干 乃阿達羅王遠孫 父文元伊干 追封興廉大王 祖文官海干 義父銳謙角干 追封宣成大王 妃資成王后 一云懿成 又孝資”

80) 『三國史記』 卷12, 新羅本紀12 神德王 卽位條, “神德王立 … 妃金氏 憲康大王之女 孝恭王薨 無子 爲國人推戴 卽位”

의 아들 효공왕의 뒤를 이어 신덕왕이 현강왕의 사위 자격으로 즉위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러한 추정은 신덕왕대 五廟의 구성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현재 남아있는 사료를 통해서 五廟의 배향자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신문왕·혜공왕·선덕왕·원성왕·애장왕대 뿐이다. 단, 先代에 대한 大王追封을 통해서 누가 五廟에 배향될 수 있었는지 유추하는 것이 가능하다. 大王으로 追封되었다고 해서 모두 五廟에 모셔진 것은 아니지만,⁸¹⁾ 大王으로 追封되지 않은 채로 五廟에 모셔질 수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⁸²⁾

신덕왕의 경우 父系로서 친부와 의부까지는 大王으로 추봉하였으나, 할아버지 문관 해간은 大王으로 추봉하지 않았다.⁸³⁾ 증조와 고조의 경우 이름조차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다. 母系 쪽으로도 外祖까지를 大王으로 추봉했을 뿐, 외증조인 원린 각간은 추봉한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⁸⁴⁾ 그런데 애장왕대 이후로 무열왕과 문무왕이 別廟에 모셔지면서 始祖大王을 제외한 4代祖로 五廟가 구성되었으므로,⁸⁵⁾ 考나 祖까지만을 추봉해서는 五廟를 다 채울 수 없게 된다. 이를 통해 신덕왕대에 친부·의부를 포함한 父系와 母系의 4대조까지를 五廟에 모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결국 신덕왕대 五廟의 배향자는 妃父인 憲康王을 기점으로 妃祖 景文王,

81) 元聖王은 증조·고조까지 大王으로 추봉하였지만, 당시 무열왕과 문무왕이 不遷의 位를 지키고 있었으므로, 五廟에 모셔진 것은 考 明德大王(孝養)과 祖 興平大王(魏文)까지였다(『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元聖王 元年條, “毀聖德大王開聖大王二廟 以始祖大王太宗大王文武大王及祖興平大王考明德大王爲五廟 ……”).

82) 때문에 나희라·채미하 등도 모두 추봉에 기반하여 오묘를 추정한 바 있다(나희라, 『신라의 국가제사』(지식산업사, 2003), pp.200-207; 채미하, 앞 책(2008), pp.195-227).

83) 『三國史記』 卷12, 新羅本紀12 神德王 元年 五月條, “追尊考爲宣聖大王” 『三國遺事』 卷1, 王曆第一 第五十三神德王條, “父文元伊干 追封興康大王 祖文官海干 義父銳謙角干 追封宣成大王”

84) 『三國遺事』 卷1, 王曆第一 第五十三神德王條, “母貞花夫人 夫人之父 順弘角干 追諡成虎大王 祖元隣角干 乃阿達羅王遠孫”

85)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哀莊王 2年 春2月, “謁始祖廟 別立太宗大王文武大王二廟 以始祖大王 及王高祖明德大王 曾祖元聖大王 皇祖惠忠大王 皇考昭聖大王 爲五廟”

妃曾祖 疑恭大王, 妃高祖 僖康王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신덕왕은 憲康王의 사위 자격으로 왕위를 계승하였고, 五廟를 통해서도 이러한 왕통의 전수를 표방하였던 것이다.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삼국사기』에서는 그의 父가 伊滄 孝宗이라는 것만을 밝히고, 그 위로는 문성대왕의 후예라고만 언급하였을 뿐 자세한 계보를 기록하지 않았다.⁸⁶⁾ 추봉 사실도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것만 남아 있다.⁸⁷⁾ 『삼국유사』 왕력을 통해서 祖가 官□ 角干으로서, 懿興大王으로 추봉되었음은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계보는 역시 나와 있지 않다.⁸⁸⁾ 결국 부계로는 문성왕에 이르기까지 前王과의 연관성을 쉽게 찾기 어렵다고 하겠다.

그런데 『삼국유사』 왕력에서는 그의 어머니 桂娥太后가 憲康王의 딸임을 밝히고 있다.⁸⁹⁾ 즉, 경순왕의 아버지 효종은 헌강왕의 사위였던 것이다. 신덕왕이 헌강왕의 사위로서 즉위할 수 있었던 것처럼, 경순왕 또한 헌강왕 사위의 아들, 곧 헌강왕 外孫의 자격으로 즉위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五廟의 배향자를 살펴봐도, 부계로는 증조와 고조의 大王 追封을 확인할 수 없다. 아버지 神興大王(효종)에서 아버지의 장인이자 자신의 외할아버지인 憲康王, 외증조 경문왕, 외고조 의공대왕(계명)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王統을 상정하여 五廟를 설정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신라의 왕위계승은 부자상속을 기반으로 하지만, 사위도 계승권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⁹⁰⁾ 外孫으로서의 계승

86) 『三國史記』 卷12, 新羅本紀12 敬順王 卽位條, “敬順王立 諱博 文聖大王之裔孫 孝宗伊滄之子也 母桂娥太后”

87) 『三國史記』 卷12, 新羅本紀12 敬順王 元年 11月, “追尊考爲神興大王 母爲王太后”

88) 『三國遺事』 卷1, 王曆1, “第五十六 敬順王 金氏 名傳 父孝宗伊干 追封神興大王 祖官□角干 追封懿興大王”

89) 『三國遺事』 卷1, 王曆1, “第五十六 敬順王 … 母桂娥太后 憲康王之女也”

90) 물론 부자간의 계승이 원칙적이며 우선시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위의 계승은 부자 상속에 비하여 사례가 훨씬 적다. 사위의 왕위계승권에 주목한 것은 당시 사위가 아들, 특히嫡子와 동등한 계승권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왕위 계승에서 배제되지 않고

또한 이러한 관념의 연장선상에 있다. 사위의 왕위계승권은 앞서 언급한 실질적 왕위쟁탈전의 세 사례 중 아직 다루지 않은 마지막 무력 분쟁, 곧 흥덕왕 사후의 왕위계승 분쟁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기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V. 흥덕왕 사후 왕위계승 분쟁과 忠恭

흥덕왕 사후의 왕위계승 분쟁은 지금까지 분지화한 家系가 왕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무력을 사용하면서까지 대립한 대표적인 사례로 여겨져 왔다. 李基白은 元聖王의 孫 6명이 모두 侍中에서 출발하여 대개 上大等を 거쳐 王位에 오르거나 오르려 했다는 것을 근거로 이들이 각각 王權과 맞서는 독립된 家系의 長으로서 그 정치적 지위를 확보하려 하였다고 보았는데,⁹¹⁾ 흥덕왕 사망 후의 분쟁이 그 단적인 예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형제간인 俊翁(소성왕)-연승(헌덕왕)-수종(흥덕왕)-충공과 均正-헌정이 생시에 이미 각각 독립된 家系를 이루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미 家系가 개인 혹은 단독 家(family)로 해체된 것이 되기 때문이다.

李基東은 좀더 구체적으로 한 代 위인 元聖王 王子를 기준으로 仁謙太子系와 禮英太子系를 구분하여, 흥덕왕 재위시에 유지되던 兩太子系의 견제와 균형이 흥덕왕이 후계자 지명 없이 薨去함에 따라 격심한 왕위계승 쟁탈전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하였다.⁹²⁾ 이후 禮英太子系는 다시 憲貞系와 均貞系로 兩分되어 대립과 타협을 이어나갔다고 하였다.⁹³⁾ 이와

계승권자 후보 중 하나로 간주될 수 있었다는 점이 다른 시대의 왕조와 구분되는 특징적 면모라고 보는 것이다.

91) 李基白, 앞 책(1974), p.181.

92) 李基東, 앞 책(1984), pp.163-165.

93) 李基東, 앞 책(1984), pp.167-173.

같은 이해 방식은 통설로서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다.⁹⁴⁾

그러나 이러한 왕위계승 분쟁의 와중에 특정인을 공통 조상으로 하는 분지화한 家系가 세력의 기반으로 직접 표방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왕위계승 분쟁에 가담했던 인물들을 某系로 분류한 것은 그들의 父系 系譜를 기준으로 하여 현대의 연구자들이 상정한 구도이다. 따라서 이들이 어떠한 자격으로 왕위계승 분쟁에 뛰어들었는지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흥덕왕 사망 직후 대립한 두 세력은 균정과 제릉을 대표로 삼고 있다.⁹⁵⁾ 제릉 일파에는 金明과 利弘·裴萱伯 등이 속해 있었고, 균정의 아들 우징과 우징의 조카 예징, 金陽 등이 균정과 한 편을 이루었다. 균정은 원성왕의 손자이며, 원성왕대에 태자로 책봉된 바 있었던 禮英의 아들이다.⁹⁶⁾ 즉, 기존의 분류에 따르면 예영계의 대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균정에 맞선 제릉은 원성왕의 손자 憲貞의 아들로서,⁹⁷⁾ 그의 아버지 헌정 역시 예영의 아들로서 균정과는 친형제지간이었다.⁹⁸⁾ 역시 기존의 분류대로라면 예영계에 해당한다. 때문에 이를 예영계가 다시 균정계와 헌정계로 세분된 것으로 파악해 왔다. 그런데 제릉 일파에 해당하는 김명의 아버지는 忠恭이었다. 그는 원성왕의 손자이자, 헌덕왕의 동생으로서, 원성왕대에 太子로 임명된 바 있었던 仁謙의 아들이다. 따라서 김명은 기존의 분류에 의한다면 인검계에 속한다. 예영계에서 분지된 헌

94) 李仁哲, 「新羅 骨品制社會의 親族構造」 『정신문화연구』 36(1989), p.156.
 95)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僖康王 卽位條, “初 興德王之薨也 其堂弟均貞堂弟之子梯隆 皆欲爲君 於是 侍中金明阿滄利弘裴萱伯等 奉梯隆 阿滄祐徵與姪禮徵及金陽 奉其父均貞 一時 入內相戰 金陽中箭 與祐徵等逃走 均貞遇害 而後梯隆乃得卽位”
 96)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神武王 卽位條, “神武王立 諱祐徵 元聖大王孫均貞上大等之子 僖康王之從弟也 禮徵等既清宮禁 備禮迎之 卽位 追尊祖伊滄禮英<一云孝眞>爲惠康大王 考爲成德大王 母朴氏眞嬌夫人爲憲穆太后 立子慶膺爲太子”
 97)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僖康王 卽位條, “僖康王立 諱梯隆<一云梯顯> 元聖大王孫伊滄憲貞<一云草奴>之子也 母包道夫人 妃文穆夫人 葛文王忠恭之女”
 98) 『三國遺事』 卷1, 王曆第一 第四十三僖康王條, “金氏 名愷顯 一作梯顯 父憲貞角干 諡興聖大王 一作翌成 禮英匪干子也”

정계에 인검계가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흥덕왕 사망 후 왕위를 노리고 벌어진 무력 대결은 인검계와 예영계 혹은 예영계 내 두 分派 간의 대결로 파악할 수 없다. 이를 각 家系 간의 타협 혹은 家系의 내분으로 복잡하게 설명하려는 시도는, 이것이 왕위를 노리고 대립한 파벌의 분할 양상을 보여주는 최초이자 거의 유일한 사례임을 고려할 때 성립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처음 표면화된 순간부터 이미 家系에 기반한 대립의 양상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小家系를 더 나누거나 타협과 연합으로 한발 물러서는 등 설명체계를 더욱 복잡화하기보다는 家系가 분지화했으리라는 전제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방향성이다.

그런데, 흥덕왕 사망 직후의 왕위 쟁탈전에서 계룡이 승리하여 즉위함으로써 왕위를 둘러싼 다툼이 종결된 것은 아니었다. 계룡의 편에 섰던 김명과 利弘 등이 3년 만에 왕에게서 등을 돌리고 꺾박하여 자살하게 함으로써,⁹⁹⁾ 왕위 쟁탈전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다. 민애왕 김명이 즉위하자, 청해진에 의탁해 있던 균정의 아들 우정은 이를 빌미로 청해진의 군대를 빌려 민애왕을 제거하고 왕위에 올랐다.¹⁰⁰⁾ 이상의 과정을 지금까지는 왕통이 인검계인 김명에게 넘어갔다가 다시 예영계 중에서도 균정계인 우정에게 넘어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인 계통의 변화일 뿐, 그들이 그와 같은 小家系를 하나의 세력 단위로 활동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다. 하나의 세력이라고

99) 『三國史記』卷10, 新羅本紀10 僖康王 3년條, “春正月 上大等金明侍中利弘等 興兵作亂 害王左右 王知不能自全 乃縊於宮中 諡曰僖康 葬于蘇山”
 『三國史記』卷10, 新羅本紀10 閔哀王 卽位條, “閔哀王立 姓金氏 諱明 元聖大王之曾孫也 大阿滄忠恭之子 累官爲上大等 與侍中利弘 逼王殺之 自立爲王”

100) 『三國史記』卷10, 新羅本紀10 閔哀王 元年條, “二月 金陽募集兵士 入清海鎮 謁祐徵 阿滄祐徵在清海鎮 聞金明篡位 謂鎮大使弓福曰 金明弑君自立 利弘枉殺吾父 不可共戴天也 願仗將軍之兵 以報君父之讎”
 『三國史記』卷10, 新羅本紀10 神武王 卽位條, “神武王立 諱祐徵 元聖大王孫均貞上大等之子 僖康王之從弟也 禮徵等既清宮禁 備禮迎之 卽位”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家系가 세분화되어 있었으며, 利弘과 裴萱伯, 김양에서 장보고에 이르기까지 해당 小家系에 속하지 않는 이들이 각 파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애초에 당시에는 近親婚이 허용되고 있었으므로, 妃系나 母系를 감안하면 인결계와 예영계를 나누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관계가 얽혀 있다.

앞서 살펴본 사위의 왕위 계승권에 주목하면, 흥덕왕 사후 발생한 왕위쟁탈전의 성격을 실체가 확실하지 않은 ‘小家系 分枝化’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흥덕왕 秀宗은 同母兄 헌덕왕 14년(822)에 副君으로 임명되어, 東宮에 해당하는 月池宮으로 들어갔다.¹⁰¹⁾ 이때 그는 원래 上大等の 職에 있었는데, 東宮의 지위에 오르면서 물러났고, 侍中을 맡고 있던 忠恭이 上大等の 지위를 물려받았다.¹⁰²⁾ 충공은 원성왕의 長子 仁謙太子의 아들로서 소성왕·헌덕왕·흥덕왕의 동생이었다. 흥덕왕이 兄인 헌덕왕의 뒤를 이어 즉위하자, 충공은 흥덕왕에 의해 太子로 책봉되었다.¹⁰³⁾

그러나 그는 실제로 왕위에 오르지 못했는데, 이는 흥덕왕보다 먼저 죽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흥덕왕은 이후 새로운 太子를 책봉하거나, 遺詔를 통해서 후계자를 지명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 동생인 충공을 太子로 책봉했던 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흥덕왕에게 왕위를 계승할 만한 자식이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충공의 죽음으로 공식적인 계승자가

101)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憲德王 14年 春正月條, “以母弟秀宗爲副君 入月池宮<秀宗或云秀升>”

102) 『三國史記』 卷10, 憲德王 13年 夏4月條에는 “侍中金忠恭卒 伊浪永恭爲侍中”이라고 헌덕왕 13년(821)에 충공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同 祿眞列傳에 따르면 秀宗이 月池宮에 들어갔을 때 角干으로서 上大等이 되었다고 하며, 헌덕왕 14년(822) 김현창의 난에서 활약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사는 동명이인에 대한 것이거나(李基東, 앞 책(1984), p.162), 착오에 기반한 것으로 생각된다(李基白, 『新羅 執事部の 成立』 『震檀學報』 25:26-27合(1964)(앞 책(1974), p.183에 제수록)에서는 ‘卒’이 ‘退’의 誤字로서, 충공이 시중 자리에서 물러난 사실이 사망한 것으로 잘못 기록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103) <智證大師寂照塔碑文>, “及興德大王篡戎 宣康太子監撫”

사라진 상태로, 차기 왕위의 향방은 혼란에 빠졌으며, 이는 결국 무력 충돌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후의 왕위 쟁탈에서 계승권을 놓고 다툰 이들은 모두 직전의 공식 왕위 계승권자인 충공과 가까운 관계에 있었음이 주목된다. 먼저, 왕위 쟁탈전에서 1차적으로 승리하여 왕위에 오른 희강왕 제릉은 흔히 父系로 예영계, 그 중에서도 헌정계로 분류되지만, 그의 장인은 충공이었다. 그가 예영계나 헌정계의 가계 대표자로서가 아니라, 직전 왕위 계승권자의 사위로서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주장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재위 기간이 매우 짧았던 희강왕이 재위 중 자신을 중심으로 한 五廟의 정비를 완료할 수 있었는지는 현재로서 확인하기 어렵다. 단, 그가 2년 춘정월에 아버지 헌정을 翫成大王으로, 어머니 박씨를 順成太后로 봉하면서, 할아버지 예영에 대한 大王 추봉은 시행하지 않았음이 주목된다.¹⁰⁴⁾ 예영은 직계 손자인 神武王 元년에 이르러서야 惠康大王으로 추봉된다. 희강왕대에 五廟를 구성했다면 大王으로 추봉되지 못한 예영은 배향될 수 없었을 것이다.

반면, 그의 장인은 葛文王 忠恭으로 정당한 왕위계승권을 인정받았던 존재였으며, 충공의 아버지 인겸 또한 이미 소성왕대에 惠忠大王으로 追封되었다.¹⁰⁵⁾ 결국 희강왕대 五廟를 상정한다면 大王으로 추봉되지 않았던 예영을 포함시켜야 하는 父系보다는 始祖大王 외에 妃父인 갈문왕 충공, 妃祖인 혜충대왕(인겸), 妃曾祖 원성왕, 妃高祖 明德大王(효양)으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편이 자연스럽다고 하겠다.¹⁰⁶⁾ 이렇게 볼

104) 『三國史記』卷10, 新羅本紀10 僖康王 2年 春正月, “追封考爲翫成大王 母朴氏爲順成太后”

105) 『三國史記』卷10, 新羅本紀10 昭聖王 元年 夏5月, “追封惠忠太子爲惠忠大王”

106) 희강왕이 즉위할 왕통의 근원이 되었던 장인 충공이 大王으로 추봉되지 않고 갈문왕이 었음은 매우 특이한 모습이다. 충공은 중고기 이후 확인되는 유일한 갈문왕으로서, 그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제기된 바 있다. 충공이 大王으로 추봉되는 것은 그의 아들 민애왕대에 이르러서이다. 大王 追封이 시작된 이래로, 왕의 장인을 大王으로 追封

경우에는 오히려 王統에 있어서 ‘인검계’를 표방했던 것이 된다. 따라서 희강왕이 예영의 손자라는 점만으로 그가 ‘예영계’의 분지화된 가계 집단 소속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한편 흥덕왕 사후 최초의 왕위쟁탈전에서 희강왕 제룡의 반대편을 대표하여 왕위에 도전했던 균정 또한 충공의 사위였다. 균정의 아들 현안왕의 어머니가 곧 충공의 딸 照明夫人이었던 것이다.¹⁰⁷⁾ 균정은 원성왕의 손자이자 예영의 아들인 동시에, 인검의 아들이자 직전 왕위계승권자였던 충공의 사위였으므로, 그를 ‘예영계’라거나 독자적인 ‘균정계’의 소가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간주하는 것은 父系 혈통에만 기반한 단순한 추정이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흥덕왕 사망 직후의 왕위쟁탈전에서는 균정에 맞서 희강왕 제룡을 도왔다가, 희강왕 즉위 이후에 다시 희강왕을 시해하고 즉위한 민애왕 김명은 곧 충공의 아들이다. 결국 흥덕왕 사후 왕위를 놓고 대립했던 세 인물, 균정과 희강왕 제룡, 그리고 민애왕 김명은 직전 왕위계승권자인 충공의 사위나 아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흥덕왕이 충공 다음의 후계자를 지명하지 못한 채 사망하자, 충공의 사위와 자식 간에 왕위 계승을 둘러싼 대립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대립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무력 충돌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영계와 인검계, 현정계와 균정계의 각 小家系간 왕위쟁탈이라는 이해 방식은 父系 親族과 家系 分枝化의 이미지를 당시 상황에 투영한 것으로, 정작 사료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한 사례는 없었다. 이는 사위에게 王統이 전달될 경우, 왕통의 근원이 되는 장인(妃父)은 당연히 이미 왕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충공은 유일한 공식적 왕위계승권자로서 사위에 의해 왕통의 근원으로 간주되면서도, 실제로 왕위에 오르지는 못했던 특이한 사례이다. 중고기 이후로 사용된 바 없었던 葛文王이란 용어를 근 200년만에 단 한 차례 다시 사용하게 된 데에는 이러한 충공의 특수한 상황이 배경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있다.

107) 『三國史記』卷11, 新羅本紀11 憲安王 卽位條, “憲安王立 諱諠靖<一云祐靖> 神武王之異母弟也 母照明夫人 宣康王之女”
여기서의 ‘宣康王’은 충공의 追封號인 宣康大王임이 분명하다.

희강왕과 민애왕에 의해 밀려났던 균정의 아들 우징이 민애왕을 시해하고 왕위에 오름으로써, 흥덕왕 사후의 왕위쟁탈전은 일단락된다. 이것은 신라사에서 확인 가능한 왕위계승 분쟁의 마지막 사례로서, 이후 더 이상 왕위를 둘러싼 왕실 인물들 간의 대립이 표면화되는 일은 찾아볼 수 없다.

VI.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무열왕대 이후부터 하대에 걸쳐 분지화된 가계가 세력을 형성하여 그 대표자 간에 왕위를 다투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흔적은 확인하기 어렵다. 일반적인 왕조 국가의 경우에서처럼, 前王과의 혈연관계를 기준으로 왕위가 승계되었을 뿐이다. 부자 상속이 원칙이나 태자 책봉, 유조 등으로 전왕의 의사가 공표되면 이것이 준수되는 것이 관례였다. 신라 왕위계승 방식의 특수성은 사위의 계승권이 인정되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近親婚의 용인과 사위의 왕위 계승권 인정이라는 요인 때문에 무열왕대 이후 신라에서는 ‘왕족’과 그 외의 진골 간의 명확한 구분을 설정하기 어렵다. ‘왕족’은 ‘왕의 일가’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지만, ‘일가’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가 문제가 된다. ‘왕족’과 다른 家門·족속들 간의 차이점을 궁극적으로 王位에 오를 수도 있는 혈통적 정통성을 가지는가 하는 점에서 찾을 경우, 뒷 시기에 권력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入仕하지 못하게 했던 ‘宗親’의 범위를 참고할 수 있다. 이들이 일반적인 文武 朝官과 다른 대우를 받았던 이유가 王과의 가까운 親屬 관계를 가졌다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宗親不任以事’의 원칙은 고려시대부터 존재했지만, 入仕 禁止의 한계

가 몇 等親까지였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¹⁰⁸⁾ 조선 定宗은 개국 직후 일시적으로 허용해 왔던 宗親과 駙馬의 仕宦을 다시 금지하도록 하면서 그 범위를 ‘期大功之親’으로 잡은 바 있다.¹⁰⁹⁾ 世宗代에는 宗室의 爵秩을 정하면서 五服에 의거하여 親盡에 이르면 일반적인 朝官과 마찬가지로 入仕하도록 규정하였는데,¹¹⁰⁾ 이것이 『經國大典』에 반영되어 이후 기본 원칙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신라에서는 王의 近親에 대한 정치 참여 배제 조치가 없었다. 문무왕대 王의 親兄弟로서 ‘왕족’으로 간주되었을 王文·智鏡·愷元 등이 상대등과 中侍 등 최고급 관직에 있었으며, 다른 형제들 또한 그 관등을 통해 마찬가지로 주요 관서 장관직에 준하는 관직을 보유하고 있을 것임이 유추된다. 언승(헌덕왕)·수중(흥덕왕)·충공·헌정·균정 등 원성왕의 손자들 또한 조카인 애장왕대 및 형제 혹은 종형제인 헌덕왕·애장왕대에 상대등·시중·병부령 등 핵심 관직을 번갈아 맡으며 정계에서 함께 활동하였다.

아울러 官職 임명이나 승진의 기준에 왕과의 親屬 관계가 중요시되었다는 『新唐書』 新羅傳의 언급을 감안하면, 宗親과 朝官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駙馬에 대한 仕宦 금지 또한 행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경문왕 응림의 경우처럼 王의 사위 자격으로 王위에 오르는 것까지 가능했다. 진골 가운데 王家와의 혼인에 대한 독점권이 인정되는 특정 家門이 존재했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결국 진골들은 혼인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王위 계승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존재였다고 하겠다.

따라서 신라의 경우 ‘왕족’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宗親과 朝官의 구분이 없었던 데서 확인되듯이, 애초에 入仕의 ‘親盡’ 범위 설정이 시도되지 않았으며, 近親婚이 성행했기 때문에 멀어졌던

108) 金成俊, 「宗親府考」 『史學研究』18(서울: 韓國史學會, 1964), p.11.

109) 『定宗實錄』卷4, 2年 4月 18日條, “…… 期大功之親, 不任以事, 皆令封君, 餘皆勿論, 其儀衛, 禮曹議之. 但寡人無駙馬, 故駙馬儀衛及任事與否, 其勿論焉.”

110) 『世宗實錄』卷102, 25年 12月 9日條, “…… 親盡則仕進, 依文武官例施行.”

친족 관계도 혼인을 통해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구조였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나 자신의 직계 후손이 왕위에 오르는 것도 가능했다. 기존에 ‘왕권’과 ‘귀족’의 대립이라는 단순화된 구도를 넘어서기 위해 外戚에 주목한 시도가 있었으나,¹¹¹⁾ 혼인을 통해 왕위계승권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한 왕위계승 원칙을 감안하면 신라 사회에 ‘外戚’이라는 용어를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된다.¹¹²⁾

이처럼 사위의 왕위 계승권 인정은 다른 왕조 국가의 왕위 계승 양상과 비교할 때 작은 차이이지만, 신라 정치 운영의 특징적인 면모 중 하나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前王이나 現王 父系로 혈연 관계를 맺고 있지 않더라도, 왕과 혼인 관계를 체결함으로써 자신이나 子·孫 단계에 왕위에 오를 수도 있는 왕위계승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사 왕위에 오르지 못하더라도 관직 계수에 있어서 왕과의 親屬에 기반한 班序가 중요시되었으므로, 왕 또는 왕의 至親과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고위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중요한 기반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진골을 ‘귀족’으로서 ‘왕권’의 대척점에 위치하는 정치 세력으로 간주해 온 기존의 이해 방식은 이와 같은 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이분법적으로 바라본 것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신라 중·하대에 확인되는 왕위를 둘러싼 분쟁의 사례들은 ‘왕권’과 그 반대편의 ‘귀족’ 간에 벌어진 정치적 주도권 다툼이라기보다 왕위에 접근할 자격을 갖춘 이들 사이에서 왕위의 획득을 두고 벌어진 것들이기 때문이다.

■ 논문투고일자: 2017. 4.13. 심사완료일자: 2017. 5.12. 게재확정일자: 2017. 5.16.

111) 박해현, 『신라 중대 정치사 연구』(국학자료원, 2003).

李泳鎬, 「통일신라시대의 王과 王妃」 『新羅史學報』 22(2011).

112) 전덕재, 「신라 중대」 『한국 고대사연구의 새 동향』(서경문화사, 2007), p.142에서도 종실들의 사환을 제한하지 않아 종실들이 국가의 요직에 등용되었고, 왕실이 일반적으로 족내혼을 행하였으므로, 신라 중대에 外戚을 정국운영의 중요한 요소로 설정하는 것은 위협하다고 지적하였다.

[참고문헌]

- 권영오, 『新羅下代 政治史 研究』(혜안, 2011).
- 金成俊, 「宗親府考」 『史學研究』18(서울: 韓國史學會, 1964).
- 金昌謙, 『新羅 下代 王位繼承 研究』(景仁文化社, 2003).
- 나희라, 『신라의 국가제사』(지식산업사, 2003).
- 남권희, 「과른본 『三國遺事』의 書誌 연구」 『東方學志』 162(서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3).
- 盧明鎬, 「高麗社會의 兩側의 親屬組織 研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國史學科 文學博士學位論文(1988a).
- 盧明鎬, 「羅末麗初 親族組織의 변동」 『又仁 金龍德博士 停年紀念史學論叢』(又仁金龍德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刊行委員會, 1988b).
- 盧泰敦, 「羅代의 門客」 『韓國史研究』21:22(1978).
- 盧泰敦, 『한국고대사의 이론과 쟁점』(집문당, 2009).
- 박해현, 『신라 중대 정치사 연구』(국학자료원, 2003).
- 邊太燮, 「廟制의 變遷을 通하여 본 新羅社會의 發展過程」 『歷史教育』 8(1964).
- 吳星, 「新羅 元聖王系の 王位交替」 『全海宗博士華甲紀念 史學論叢』(一潮閣, 1979).
- 尹炳喜, 「新羅下代 均貞系の 왕위계승과 金陽」 『歷史學報』 96(1982).
- 李基東, 「新羅 奈勿王系の 血緣意識」 『歷史學報』 53:54(1972).
- 李基東, 「新羅 中古時代 血族集團의 特質에 관한 諸問題」 『震檀學報』 40(1975).
- 李基東, 「新羅 骨品制 研究의 現況과 그 課題」 『歷史學報』 74(1977).
- 李基東, 「新羅 下代의 王位繼承과 政治過程」 『歷史學報』 85(1980).
- 李基東,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一潮閣, 1984).
- 李基白, 「新羅 私兵考」 『歷史學報』 9(1957).
- 李基白, 「上大等考」 『歷史學報』 19(1962).
- 李基白, 「新羅 執事部の 成立」 『震檀學報』 25:26-27合(1964).

- 李基白, 「新羅時代의 葛文王」 『歷史學報』 58(1973).
- 李基白, 『新羅政治社會史研究』(一潮閣, 1974).
- 李明植, 「新羅 元聖王系の 分枝化와 王權崩壞」 『中齋張忠植博士華甲紀念論叢』 (檀國大學校出版部, 1992).
- 李文基, 「新羅時代의 兼職制」 『大丘史學』 26(1984).
- 李文基, 「新羅 金氏王室의 少昊金天氏 出自觀念의 標榜과 變化」 『歷史教育論集』 23:24(1999).
- 李純根, 「新羅時代 姓氏取得과 그 意味」 『韓國史論』 6(서울: 서울大 國史學科, 1980).
- 李泳鎬, 「통일신라시대의 王과 王妃」 『新羅史學報』 22(2011).
- 李仁哲, 「新羅 骨品制社會의 親族構造」 『정신문화연구』 36(1989).
- 이재환, 「신라사 연구에 있어서 ‘귀족’ 개념의 도입 과정」 『한국 고대사 연구의 시각과 방법』(사계절, 2014).
- 李鍾書, 「羅末麗初 姓氏 사용의 擴大와 그 背景」 『韓國史論』 37(서울: 서울大 國史學科, 1997).
- 李鍾旭, 『新羅上代王位繼承研究』(民族文化研究所, 1980).
- 李鍾旭, 「新羅時代의 眞骨」 『東亞研究』 6(서울: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85).
- 李鍾旭, 『新羅骨品制研究』(一潮閣, 1999).
- 李鍾恒, 「新羅의 身分制度에 관한 研究 -部와 骨品과 位階를 中心으로-」 『法史學研究』 1(1974).
- 全德在, 『新羅六部體制研究』(一潮閣, 1996).
- 전덕재, 「신라 중대」 『한국 고대사연구의 새 동향』(서경문화사, 2007).
- 鄭淳日, 「唐代 金氏 관련 墓誌의 초보적 檢討」 『新羅史學報』 16(2009).
- 조인성, 「신라 하대·후삼국」, 『한국 고대사 연구의 새 동향』(서경문화사, 2007).
- 朱甫墩, 「新羅 下代 金憲昌의 亂과 그 性格」 『한국고대사연구』 51(2008).
- 채미하, 『신라 국가제사와 왕권』(혜안, 2008).
- 崔柄憲, 「新羅 下代社會의 動搖」 『한국사 3』(국사편찬위원회, 1978).
- 최연식, 「고려시대 국왕문서의 종류와 기능」 『國史館論叢』 87(國史編纂委員會, 1999).

- 최의광, 「新羅 下代 王位繼承 分爭과 國人」 『史叢』 75(서울: 高麗大學校 歷史研究所, 2012)
- 崔在錫, 「新羅王室의 王位繼承」 『韓國家族制度史研究』(一志社, 1983).
- 崔在錫, 「新羅時代의 氏族·리니지의 存否問題」 『韓國學報』 48(一志社, 1987).
- 崔在錫, 『韓國古代社會史研究』(一志社, 1987).
- 河日植, 「『삼국유사』 파본본과 임신본의 비교 검토」 『東方學志』 162(서울: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3).
- 河廷龍, 「新羅上代 王位繼承 研究 -王室內 近親婚을 中心으로-」 『新羅文化』 12(1995).
- 旗田巍, 『朝鮮史』(東京: 岩波書店, 1951).
- 末松保和, 『新羅史の諸問題』(東京: 東洋文庫, 1954).
- 三品彰英, 「骨品制社会」 『古代史講座 7 古代社会の構造(下)—古代における身分と階級—』(東京: 學生社, 1963).

Rethinking Lineage-branching Theory on 'True-bone(眞骨)' Status in the Silla Dynasty

Lee, Jaehwan

[Abstract]

It has been widely accepted that 'true-bone' status has branched from a single patrilineal group to several lineages and the leaders of the lineages fought each other for the throne in the late age(下代) of Silla. However, during the armed conflicts around the throne from the end of the middle age(中代) to the early of the late age(下代), there was no case that a group sharing a particular ancestor was designated as a unit of power.

The peculiarity of Silla in the succession of the throne was not the branching of lineages but that the king's son-in-law could succeed the throne too. The right of succession of son-in-law is shown in the story about succession to the throne at the early-late period(上古期), and there are also actual cases like the King Kyeongmun(景文王) who was the son-in-law of the King Heonan(憲安王). It can be confirmed through the list of the ancestors enshrined in the royal ancestral shrine(五廟) that the king Shindeok(神德王) and the king Kyeongsun(敬順王) could succeed the throne as son-in-law and daughter's son of former king Heongang(憲康王). Wars of succession after the death of the king Heungdeok(興德王), which were regarded as representative examples of collisions between branched lineages, were also battles between sons and son-in-laws of Chunggong(忠恭) who was the rightful successor.

Thus, the cases of the dispute over the throne in the middle and the late Silla were not the struggles between the 'kingship' and the 'nobles', but the conflicts among those who deserve access to the throne. By the time King Muyeoul(太宗

武烈王) was crowned, it became difficult to establish a clear distinction between 'royal family' and the other 'true-bone' status.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manson97@snu.ac.kr)

Key words : lineage-branching, true-bone status(眞骨), son-in-law, succession to the throne, royal ancestral shrine(五廟), royal family, aristocrat